**「지적재산기본법」**

[법률 제66호, 2015.9.11., 개정]

**□ 개 요**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은 2002년 공포된 법률로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적재산과 지적재산권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총4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章　総則**  第一条 目的  第二条 定義  第三条 国民経済の健全な発展及び豊かな文化の創造  第四条 我が国産業の国際競争力の強化及び持続的な発展  第五条 国の責務  第六条 地方公共団体の責務  第七条 大学等の責務等  第八条 事業者の責務  第九条 連携の強化  第十条 競争促進への配慮  第十一条 法制上の措置等  **第二章　基本的施策**  第十二条 研究開発の推進  第十三条 研究成果の移転の促進等  第十四条 権利の付与の迅速化等  第十五条 訴訟手続の充実及び迅速化等  第十六条 権利侵害への措置等  第十七条 国際的な制度の構築等  第十八条 新分野における知的財産の保護等  第十九条 事業者が知的財産を有効かつ適正に活用することができる環境の整備  第二十条 情報の提供  第二十一条 教育の振興等  第二十二条 人材の確保等  **第三章　知的財産の創造、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推進計画**  **第四章　知的財産戦略本部**  第二十四条 設置  第二十五条 所掌事務  第二十六条 組織  第二十七条 知的財産戦略本部長  第二十八条 知的財産戦略副本部長  第二十九条 知的財産戦略本部員  第三十条 資料の提出その他の協力  第三十一条 事務  第三十二条 主任の大臣  第三十三条 政令への委任  **附　則**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요로운 문화의 창조  제4조 국가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 발전  제5조 국가의 책무  제6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7조 대학 등의 책무 등  제8조 사업자의 책무  제9조 연계 강화  제10조 경쟁 촉진에 대한 배려  제11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제2장 기본 시책**  제12조 연구 개발의 추진  제13조 연구성과의 이전 촉진 등  제14조 권리 부여의 신속화 등  제15조 소송절차의 충실 및 신속화 등  제16조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등  제17조 국제적 제도의 구축 등  제18조 신 분야의 지적재산보호 등  제19조 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유효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제20조 정보의 제공  제21조 교육의 진흥 등  제22조 인재의 확보 등  **제3장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  **제4장 지적재산전략본부**  제24조 설치  제25조 소관 사무  제26조 조직  제27조 지적재산전략본부장  제28조 지적재산전략부본부장  제29조 지적재산전략본부원  제30조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력  제31조 사무  제32조 주임 대신  제33조 정령에의 위임  **부칙** |